- 2025년 스마트 특성화 기술전환 기반구축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사업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수혜기업 모집 공고

(재)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2025년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전환 기반구축 사업"의일환으로, 전북지역 건설·농기계 산업의 전동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도, 시험·평가·인증" 기술지원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04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익산시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전북지역 건설·농기계 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전동화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평가·인증)을 통한 도내 건설·농기계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 육성

□ 지원기간

구 분	기 간	
기술지도	협약체결일 ~ 2025. 12. 05.(금)까지	
시험·평가·인증	협약체결일 ~ 2025. 12. 05.(금)까지	

- □ **지원대상**: 도내외 건설·농기계(본사, 공장, 연구소 등) 관련 기업 및 전·후방 연관기업
 - * 전·후방 연관기업: 건설·농기계 완제품 제조뿐만 아니라 전동화와 관련된 제품, 부속품, 요소부품, 모듈 등을 개발하는 기업 포함
- ※ 지원제외 대상
-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 신청 사업이 (재)전북테크노파크 및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 ≫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지원분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지원 건수	담당자	지원 대상	
기술지도 지원	• 전동화 농기계(자주식,보행형) 제품/작업기/부속품 등 설계/고장분석 컨설팅	3백만원 이내	10건 이상	전북테크노파크 손현화 책임 (063-720-3715)		
	• 전동화 농기계 완성차, 전기동력시스템 및 제어기 모듈 등 설계/고장분석/성능평가 컨설팅	3백만원 이내	10건 이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현재 수석 (063-920-1284)	도내/외	
	 전동화 건설기계 완성차, 전자유압부품 및 컨트롤러 등 설계/공정개선/신뢰성평가 컨설팅 	3백만원 이내	10건 이상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정건 그룹장 (063-734-2636)	기업	
	• 전동화 건설농기계 전동화 핵심요소기술 설계/문제진단 등 컨설팅	3백만원 이내	18건 이상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일도 교수 (063-859-6874)		
시험·평가· 인증	• 전동화 건설농기계 완제품/요소부품/모듈 등 비파괴 3D 내외부 정밀치수 분석	시험료 할인 (도내 40%이내 도외 20%이내)	15건 이상	전북테크노파크 정한진 주임 (063-720-3703)		
	 전동화 건설농기계 완성차용 전기구동 시스템, 제어기 및 주요 구성 모듈 등 	시험료 할인 (20%이내)	15건 이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정길 선임 (063-920-1273)	도내/외	
	• 전동화 건설농기계 요소부품/모듈 복합환경 신뢰성평가	시험료 할인 (20%이내)	15건 이상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정건 그룹장 (063-734-2636)	기업	
	 전동화 건설농기계 전산구조해석 및 전산유동해석 등 설계 시뮬레이션/문제진단 	시험료 할인 (20%이내)	7건 이상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일도 교수 (063-859-6874)		

[※]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소진까지 추가 지원 가능

3 유의사항 및 선정방법

□ 유의사항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불가
- 검토 간, 장비지원이 어렵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자체적격성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해 기관별 적격성 검토
- 검토결과 : 개별통보

4 추진절차 및 일정

▼ 기관별 적격성 검토 (재)전북테크노파크 2건 이상 접수 시 마다 ▼ 수혜기업 ↔ 지원기관 또는 내/외부전문가 공동 수행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 수혜기업 → (제)전북테크노파크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 (재)전북테크노파크 지원 후 3년까지	추진절차	추진방법	추진일정
사업수행 수혜기업 ⇔ 지원기관 또는 내/외부전문가 공동 수행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수혜기업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생과 모니터링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 후 3년까지	수혜기업 신청서 제출		
사업수행 수혜기업 ⇔ 지원기관 또는 내/외부전문가 공동 수행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수혜기업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생과 모니터링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 후 3년까지	_		
사업수행 또는 내/외부전문가 공동 수행 기울시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수혜기업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성과 모니터링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 후 3년까지	기관별 적격성 검토	(재)전북테크노파크	2건 이상 접수 시 마다
사업수행 또는 내/외부전문가 공동 수행 기울시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수혜기업 → (재)전북테크노파크 기술지도/시험평가인증 (2025. 12. 05.(금)까지) 성과 모니터링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 후 3년까지	▼		
결과보고서 세출 (재)전북테크노파크 (2025. 12. 05.(금)까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 후 3년까지	사업수행	또는 내/외부전문가	
결과보고서 세출 (재)전북테크노파크 (2025. 12. 05.(금)까지) ▼ (재)전북테크노파크 → 지원 후 3년까지			:
성과 모니터링 가게 하는 지원 후 3년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성과 모니터링 가게 하는 지원 후 3년까지	▼		
	성과 모니터링	(재)전북테크노파크 → 수혜기업	지원 후 3년까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수시 모집 (공고일로부터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기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 *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및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이메일	연락처
전북테크노파크	손현화 책임	handhh@jbtp.or.kr	063-720-37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현재 수석	hjshin@kitech.re.kr	063-920-1284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정건 그룹장	kjeong8@koceti.re.kr	063-734-2636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장일도 교수	bigzero0@wku.ac.kr	063-859-6874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정서식	(붙임 1) 전동화 건설농기계 기술지원 수혜기업 신청서	필수
기타서류	사업자등록증	필수

7 기타사항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 지원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수출, 고용 등) 등의 자료요청 시 선 정 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2020.1.1.)됨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 하거나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지원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이 환수(이자 포함)되고, 최대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 허위 청구(청구할 지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5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 × 3
-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정해진 목적·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 × 2
- 붙임 1.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1부.
 - 2. 장비 리스트 1부. 끝.